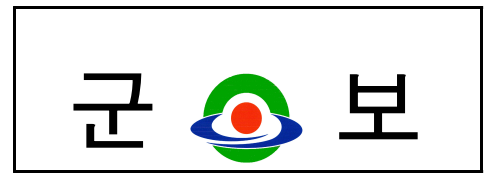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38호 2018. 12. 2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8-1114호)

입법예고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8-110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공 고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예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예천군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예 천 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1.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 하수처리 구역

연번	읍.면	리	비고
1	예천읍	남본리,노상리,노하리,동본리,대심리, 백전리,서본리,우계리,통명리 일부	
2	용문면	상금곡리,하금곡리,죽림리,성현리 일부	
3	감천면	포 리 일부	
4	보문면	미호리 일부	
5	호명면	담암리, 산합리, 금능리 일부	
6	용궁면	읍부리,가야리,금남리,산택리,향석리 일부	
7	지보면	마전리,소화리,암천리 일부	
8	풍양면	낙상리,오지리,삼강리 일부	

2. 부과대상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

3.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09.28)와 같음

4. m³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기존 : 1,471,494원

-변경 : 1,765,793원

5. 예천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표 [붙임 1]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1월 14일부터 다음 공고일 까지 시행한다.

[붙임 1]

예천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표

예 천 군

(단위 : 천원)

용 량 ㎥	원인자부담금	용 량 ㎥	원인자부담금	용 량 ㎥	원인자부담금
1	1,765	36	63,569	71	125,371
2	3,532	37	65,334	72	127,137
3	5,297	38	67,100	73	128,903
4	7,063	39	68,866	74	130,669
5	8,829	40	70,632	75	132,434
6	10,595	41	72,398	76	134,200
7	12,361	42	74,163	77	135,966
8	14,126	43	75,929	78	137,732
9	15,892	44	77,695	79	139,498
10	17,658	45	79,461	80	141,263
11	19,424	46	81,226	81	143,029
12	21,190	47	82,992	82	144,795
13	22,955	48	84,758	83	146,561
14	24,721	49	86,524	84	148,327
15	26,487	50	88,290	85	150,092
16	28,253	51	90,055	86	151,858
17	30,018	52	91,821	87	153,624
18	31,784	53	93,587	88	155,390
19	33,550	54	95,353	89	157,156
20	35,316	55	97,119	90	158,921
21	37,082	56	98,884	91	160,687
22	38,847	57	100,650	92	162,453
23	40,613	58	102,416	93	164,219
24	42,379	59	104,182	94	165,985
25	44,145	60	105,948	95	167,750
26	45,911	61	107,713	96	169,516
27	47,676	62	109,479	97	171,282
28	49,442	63	111,245	98	173,048
29	51,208	64	113,011	99	174,814
30	52,974	65	114,777	100	176,579
31	54,740	66	116,542		
32	56,505	67	118,308		
33	58,271	68	120,074		
34	60,037	69	121,840		
35	61,803	70	123,606		

주) 1) 천원이하 절사 2) 100㎥ 초과시는 100㎥의 ㎥당 단가를 적용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예 천 군 수

1. 제정 이유

- 도청신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영자전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 (안 제4조)

- 만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

나.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시간 (안 제6조)

- 운영시간 : 07:00부터 22:00까지
- 이용시간 : 1회 대여 시 기본이용시간은 대여 후 3시간으로, 운영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이용시간 내 반납을 하지 않을 시 3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납부

다. 위탁관리·운영 (안 제8조)

- 공영자산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 호명면 행복7길 25-4 통합관제센터(안전재난과)
 - 전 화 : 054-650-8974
 - 팩 스 : 054-650-897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례명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이소 자전거”(이하 “타이소”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타이소의 무인 대여·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타이소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타이소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타이소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5. “회원”이란 타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 일정기간 타이소 이용 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6. “관제서버”란 타이소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이용카드”란 타이소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타이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말한다.

8. “타이소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타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이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이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타이소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타이소 시설의 운영과 수익 및 임대 관리
4. 센터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타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4조(이용대상) 타이소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이용승인) ① 타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권(1일권)을 구입하고 「타이소 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 종류별 가입비 및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타이소 운영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이소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타이소를 대여 받을 수 있다.
- ③ 타이소 1회 대여 시 기본이용시간은 대여 받은 후 3시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이용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은 30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타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타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예천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 2. 타이소 및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 3. 타이소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4. 회원이 「타이소 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이소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타이소 및 시설물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타이소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타이소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이소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타이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가. 내용 : 자전거 및 시설물 유지보수, 대여서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나. 관련조문 : 예천군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용료 수입 : 연간 회원 2,000명으로 추산
 ○ 관리운영비 및 수익금은 안동시와 행정구역별 시설물 수량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예천군 2/3, 안동시1/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이용료 수입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 관리운영비의 안동시 분담금	64,560	67,890	67,890	67,890	67,890	336,120
	소계(a)	124,560	127,890	127,890	127,890	127,890	636,120
세출	○ 관리운영비	193,680	203,680	203,680	203,680	203,680	1,008,400
	○ 이용료 수입의 안동시 전출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213,680	223,680	223,680	223,680	223,680	1,108,400
□ 총 비용(a-b)		△ 89,120	△ 95,790	△ 95,790	△ 95,790	△ 95,790	△ 472,28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일반회계	89,120	95,790	95,790	95,790	95,790	472,280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합계		89,120	95,790	95,790	95,790	95,790	472,280

5. 부대의견

6. 작성자 : 안전재난과 시설5급 강 성 철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목	예산액(원)	산출내역(원)
계	193,680,000	
인 건 비	110,000,000	- 2,500,000원 × 4명 × 11개월 = 110,000,000원
영조물 배상공제	1,500,000	- 10,000원 × 150대 = 1,500,000원
홈페이지 운영	12,040,000	- 12,040,000원 × 1식 = 12,040,000원
자전거 수리·보수	22,500,000	- 1,500,000원 × 150대 × 10% = 22,500,000원
시스템 유지·보수	38,640,000	- 322,000,000원 × 12% = 38,640,000원
차량 유지·보수	6,000,000	- 500,000원 × 12개월 = 6,000,000
안전모 구입	3,000,000	- 20,000원 × 150개 = 3,000,000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